국토교통부 승인(건축안전과-5088, 2022.09.1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건축자재등 인정·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지침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인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2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절차 및 일반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기준 제3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위원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관리기준 제3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시 최소한 심의 개최일 5일 이전에 위원에게 심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출석 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최소 9인 이상 참석 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 진행상 심의를 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단순한 기술적인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원규에 따라 참여 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고,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에 따라 내부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내부전문가의 경우 의결에는 참여치 않는다.

⑥ 관리기준 제3조제4항의 특별 자문위원은 10인 이상으로 위촉하며, 관련 기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 6인 이상, 특별 자문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제4조(인정신청) ① 관리기준 제4조제3항의 제조업자는 관리기준 제2조제9호에 따라 별표 1의 품목에 해당하는 별표 2의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신청자가 관리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첨부 서류 내용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내용 변경 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1차로 희망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서의 첨부 서류 내용 및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변경 요청할 수 없다.

③ 관리기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공자가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기준 별표 1의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의 검사설비목록,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품질시험 희망기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는 자는 동일한 원재료 및 품질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정신청 시 관리기준 별표 1의 공통의 설계도서와 품질관리 설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품질관리 설명서의 공정에 관한 사항 및 제조·검사설비 목록은 각 제조업자 또는 제조현장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준 제4조제6항에 따른 신청자는 인정신청을 하고자하는 1인이 신청하며, 인정신청 시 협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준 제4조제7항에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제조현장이 국외에 있는 신청자가 인정신청을 위하여 국내 대리신청인에 인정신청 관련 업무를 위임한 경우를 말한다.

⑦ 관리기준 별표 1의 품질관리설명서 기재사항 중 배합비의 각 원재료 투입량 허용오차는 ± 10 % 이하로 한다.

제5조(인정신청 등의 제한) ① 원장은 신청자가 인정신청 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에 따라 인정신청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신청자에게 신청자격 제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인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신청의 보완 및 반려) ① 원장은 관리기준 별표 3에 따라 신청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관리기준 제6조제1항의 보완요청을 받았을 경우, 총 3회에 한하여 보완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기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1회당 30일 이내, 총 90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원장은 관리기준 별표 4에서 정한 품질인정업무 처리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업무진행의 보류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2. 천재지변, 국가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3. 수수료 통보에서 납부에 소요되는 기간
4. 관리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5. 제조현장이 국외에 위치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를 위한 비자 또는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6. 시료채취 이후부터 시험성적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신청자가 업무진행의 보류를 요청하는 기간은 1회에 한하여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장은 관리기준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반려하고,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① 원장은 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관리기준 별표 5의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확인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품 및 불만처리, 제품검사, 제품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의 설비점검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가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동 신청의 경우 신청된 모든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경우 원장은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현장에서 관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자와 피협약된 제조업자의 재료 또는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일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 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기준 제6조제1항2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현장 품질관리점검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관리기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완요청 1회당 30일 이내, 총 90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조현장에서 생산 또는 제작과정을 입회하여 시료채취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때 신청자는 희망하는 2곳 이상 시험기관의 순번을 정하여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시공자가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통 중인 자재 또는 건축공사장에 입고된 자재로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관리기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원재료 및 제조공정 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 신청자별, 제조현장별로 균등하게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

⑨ 제4조제5항의 경우, 원장은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해당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생산 또는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시료채취 한다.

제9조(품질시험) ①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의 항목은 별표 4와 같으며, 품질시험 방법은 각 건축자재별 부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관리기준 제9조제1항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품질시험 방법은 제3조제6항에 따라 특별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원장은 관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자가 1차로 희망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시험 신청을 하며, 관리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와 재협의하여 시험기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에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 품질시험을 신청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준 별표 1의 설계도서와 제8조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 등을 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원장에게 시험결과 통보 시 관리기준 제9조제9항에 따라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일지를 제출하며, 시험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체 제작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관리기준 제9조제5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기관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시험기관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건축법」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 심사) ① 관리기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정의 적정성 여부는 별표 4의 건축자재별 품질시험 항목의 시험 결과로 확인한다.

② 관리기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 및 안전성 여부는 별표 4의 건축자재별 품질시험 항목의 부가시험 결과로 확인한다.

③ 관리기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품질관리는 제8조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로 확인하고, 시공의 적정성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자재등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체 제작확인서로 확인한다.

④ 관리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정성 여부는 관리기준 별표 1의 설계도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자재등 품질시험 결과보고서로 확인한다.

⑤ 관리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른 건축자재별 인정품목의 신청 구조 또는 제품의 안전율은 별표 5에 따라 적용한다. 내화구조의 인정단위는 별표 5에 따른 인정단위를 적용하며, 각 구조의 해당 단위에서 절사한다.

⑥ 별표 1의 내화구조 품목 중 스터드 벽체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1. 마감용 석고보드로 방화보드와 방화방수보드를 혼용하여 신청한 경우, 부록 1의 2.4의 (2)에 따라 시험하여 모두 내화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2. 마감용과 바탕용 석고보드로 Tapered 타입과 Squared 타입 구조를 혼용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마감용 석고보드는 Tapered 타입으로, 바탕용 석고보드는 Squared 타입으로 구성하여 부록 1의 2.4의 (2)에 따라 2회 이상 시험하여 모두 내화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⑦ 원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9호가목의 내화구조 표준(이하 "내화구조 표준" 이라 한다)과 관리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른 규칙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표준(이하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표준" 이라 한다) 인정을 하는 경우,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연구(필요시 시험) 및 인정(시험)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여야 하며, 구조 또는 제품의 구성, 재료 및 시공방법 등을 포함하여 표준을 정한다.

⑧ 제7항의 내화구조 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리기준 별표 8의 관리책임자가 별표 6의 절차에 따라 별표 7의 건축자재등 표준 심사표로 심사하여 정한다.

1.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구조로서 인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내화성능시험이 4회 이상 수행되어진 구조

2. 복수의 업체가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구조 중에서 인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내화 성능시험이 수행되어진 구조로서 구성제품이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한 구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연구결과로써 제안된 구조

4.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 품질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연구결과로써 제안된 구조

⑨ 제7항의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표준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리기준 별표 8의 관리책임자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별표 7의 건축자재등 표준심사표로 심사하여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화구조 표준 및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표준(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 이라 한다)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자재등 품목의 단일 인정 구조 또는 제품
2. 시공상에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 또는 제품
3. 주요 구성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이 확인되지 않는 구조 또는 제품

⑪ 원장은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 구조 또는 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인정(유효기간 연장) 시험결과
2. 제조현장·건축공사장 품질관리확인 점검 결과 등 품질관리의 적정성 및 현장시공의 적합성
3.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조사·시험결과 등

⑫ 원장은 제3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의 적합성 및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인정 결과 등의 통보) ① 원장은 관리기준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1조의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건축자재등의 인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9에 따르며, 별표 1 이외의 인정품목에 대한 인정번호 부여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동신청의 경우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중 인정업체, 제조현장(공장)소재지에 대해 공동신청자 전부 사항을 명시하고, 제4조제5항의 경우는 인정업체를 신청업체로 하고, 제조현장(공장)소재지는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현장(공장)소재지를 포함하여 명시한다.

④ 시공자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관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중 상품명 및 유효기간은 명시하지 않으며, 제조현장(공장)소재지는 건축공사장소재지를 명시한다.

⑤ 원장은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의 명칭, 구성, 세부내용, 시공방법, 대상업체 등을 기술한 표준 인정 예고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의견제출 기간은 15일 이상)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원장은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인정번호, 인정일자, 표준의 명칭
2. 상세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
3. 구성재료, 구조체 구성 및 규격, 시공방법에 관한 세부내용 등
4. 대상업체

⑦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의 인정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별표 9의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에 따른다.

제3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

제12조(인정의 표시) ① 품질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이하 “인정업자”라 한다)는 관리기준 별표 6에 따라 인정표시를 할 때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포장에 인정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를 각각 15 ㎜ 이상으로 표시하며, 사용기간까지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인정마크의 크기는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은 노란색을 권장하나 흑백 표시도 가능하다.

③ 복합자재의 경우, 관리기준 별표 6의 인정표시 중 내화성능시간을 생략한다.

제13조(인정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정의 유효기간은 관리기준 별표 7에 따르며, 관리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정업자는 관리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정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시료채취는 제8조제6항에 따르며, 관리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품질시험 방법 변경 등으로 품질시험을 생략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품질시험은 변경된 품질시험방법으로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내화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준 제13조제7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한 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한 날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이어야 한다.

제14조(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① 원장은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에 따라 인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한지 확인하여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서를 재발급하고, 제1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원장은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제1호에 따라 양도 및 양수, 상속 등 재산권의 변동사항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장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공장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정업자가 관리기준 제14조제2호에 따라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인정업자에게 내화시험을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준 제14조제3호의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품명 변경

2. 제조현장(공장) 주소지 변경(공장이전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품질성능의 상향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변경 사항으로서 원장이 품질인정자재등 구조 또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제9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 경우

⑤ 원장은 관리기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내화 성능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인정업자는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4조제5항의 인정업자는 인정업자가 제조하지 않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관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성재료·원재료 검사, 중간검사 및 제조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협약 체결된 제조현장을 반기별 1회 이상 품질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공자는 건축공사장의 건축기간 내에 관리기준 제15조제1항 제3호의 제품검사 및 제4호의 건축공사장 상세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10항의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 인정업자는 관리기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체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생산 · 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① 인정업자는 원장에게 관리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실적,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 및 판매실적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생산 및 판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

제17조(품질인정업무 운영) 원장은 관리기준 제17조에 따라 동 기준 별표 8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건축자재별 전담팀을 정하여 인정업무를 운영한다.

제18조(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관리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현장 품질관리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건축법」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업자가 시공자인 경우 시공 종료일 이후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조현장 품질관리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제4조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신청으로 인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확인 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 제조현장의 동일 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관리기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점검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은 관리기준 제18조제4항에서 요구되는 점검 지원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관리기준 별표 5의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은 관리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에 따른 개선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선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장 품질관리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건축법」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건축공사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전에 관리기준 제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관리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건축법」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관리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관리기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건축공사장 품질관리상태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점검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은 관리기준 제19조제4항에서 요구되는 점검 지원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부록 1부터 부록 4까지의 건축공사장점검표의 품질관리 확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공사장 품질관리상태에 따른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① 원장은 관리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또는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관리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으로 인정받은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관리기준 제20조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관리기준 별표 2에 따라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으며, 인정업자가 개선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 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신청하여 인정받은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어느 하나의 제조현장에서 관리기준 제20조의 일시정지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모든 제조현장의 인정이 일시정지된다.

④ 원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인정 일시정지를 할 경우, 인정업자에게 일시정지 사유에 대해 통보하고,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1조(인정의 취소) ① 원장은 관리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업자의 품질인정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관리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으로 인정받은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관리기준 별표2의 인정취소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관리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3항의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신청하여 인정받은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어느 하나의 제조현장에서 관리기준 별표2의 인정취소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관리기준제21조제1항에 따라 모든 제조현장의 인정이 취소된다.

⑤ 원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품질인정 취소를 할 경우, 인정업자에게 인정취소 사유에 대해 통보하고,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2조(인정 조치 등의 통보) ① 관리기준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정의 일시정지 해제 시 관리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 해지일을 포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관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정자재등의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관리기준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구조명 또는 제품명,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외에 인정업자 정보, 제조현장(공장)소재지, 일시정지 또는 인정 취소일을 포함하여야 공고한다.

제23조(수수료) ① 제4조의 품질인정신청 또는 제13조 인정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표 4의 품질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험에 드는 비용은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출장비용은 수행 후 납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인정업무 수수료 환불률은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는 신청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칙 [별표 4]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인정기관이 산정하여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제 종전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지침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전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건축자재등의 품목

■ 내화구조 품목	
품 목	내 용
도료피복 철골 보	▪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층을 형성하는 도료로 철골 보를 피복한 구조
도료피복 합성 보	▪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층을 형성하는 도료로 합성 보를 피복한 구조
뿜칠피복 철골 보	▪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효과가 있는 미네랄울계, 석고계, 질석계, 시멘트계 및 퍼라이트계 등의 뿜칠을 철골 보에 피복한 구조
뿜칠피복 합성 보	▪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효과가 있는 미네랄울계, 석고계, 질석계, 시멘트계 및 퍼라이트계 등의 뿜칠을 합성 보에 피복한 구조
보드피복 철골 보	▪ 석고보드 또는 시멘트판 등 강성을 가진 판으로 피복된 철골 보 구조
구조용 집성재 보	▪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 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KS F 30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보
목재보	▪ 건축물 보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섬유블랭킷 피복 철골 보	▪ 단열재(세라믹울,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로 철골 보를 감싸는 구조
도료피복 철골 기둥	▪ 고온에 노출되었을때 단열층을 형성하는 도료로 철골 기둥을 피복한 구조
도료피복 합성 기둥	▪ 고온에 노출되었을때 단열층을 형성하는 도료로 합성 기둥을 피복한 구조
뿜칠피복 철골 기둥	▪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효과가 있는 미네랄울계, 석고계, 질석계, 시멘트계 및 퍼라이트계 등의 뿜칠을 철골 기둥에 피복한 구조
뿜칠피복 합성 기둥	▪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효과가 있는 미네랄울계, 석고계, 질석계, 시멘트계 및 퍼라이트계 등의 뿜칠을 합성 기둥에 피복한 구조
보드피복 철골 기둥	▪ 석고보드 또는 시멘트판 등 강성을 가진 판으로 피복된 철골 기둥 구조
구조용 집성재 기둥	▪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 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KS F 30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기둥
목재기둥	▪ 건축물 기둥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섬유블랭킷 피복 철골 기둥	▪ 단열재(세라믹울,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로 철골 기둥을 감싸는 구조
스터드 벽체	▪ 경량형강이나 목재(스터드 및 런너 등)에 강성을 가진 판(석고보드 또는 시멘트판 등)을 부착시킨 벽체

☞ 뒷면에 계속

콘크리트패널 벽체	▪ 발포폴리스티렌경량콘크리트복합패널,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및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등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벽체
건축용 철강재 벽체	▪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벽판으로 구성되는 벽체
건축용 보드류 벽체	▪ 양면에 강성을 가진 판(석고보드 또는 시멘트판 등)을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벽판으로 구성되는 벽체
유리벽체	▪ 유리와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벽체
경골목구조 바닥/천정	▪ 목재에 석고보드 또는 시멘트판 등 강성을 가진 판을 부착시킨 바닥
데크 바닥	▪ 데크가 콘크리트와 철근을 지지하는 영구적인 거푸집의 역할을 하는 구조
건축용 철강재 지붕	▪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지붕판으로 구성되는 지붕
건축용 시스템 지붕	▪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지붕구조로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여 제작되는 지붕
구조용 직교 집성판 벽	▪ KS F 2081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층재를 길이 및 너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 층을 인접층에 서로 직교방향으로 3개 층 이상을 접착하여 제조된 벽
구조용 직교 집성판 바닥	▪ KS F 2081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층재를 길이 및 너비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 층을 인접층에 서로 직교방향으로 3개 층 이상을 접착하여 제조된 바닥
기타 내화구조	▪ 기 인정품목 이외의 구조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목

품 목	내 용
불연 유기질 우레탄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불연재료인 우레탄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불연 유기질 EPS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불연재료인 EPS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불연재료인 그라스울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불연재료인 미네랄울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기타 불연 마감재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불연재료인 기타 불연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준불연 유기질 우레탄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준)불연재료인 우레탄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준불연 유기질 EPS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준)불연재료인 EPS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 뒷면에 계속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준)불연재료인 그라스울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준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준)불연재료인 미네랄울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내부용 준불연 유기질 우레탄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우레탄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내부용 준불연 유기질 EPS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EPS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내부용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그라스울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내부용 준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미네랄울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기타 준불연 마감재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과 준불연재료인 기타 준불연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내부용 기타 준불연 마감재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기타 준불연 심재로 구성된 마감재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목

품 목		내 용
방화문	60분+ 편개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한쪽으로 개폐되며, 차열 30분 이상 및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60분 편개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한쪽으로 개폐되며,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30분 편개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한쪽으로 개폐되며, 비차열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60분+ 양개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양쪽으로 개폐되며, 차열 30분 이상 및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60분 양개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양쪽으로 개폐되며,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30분 양개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양쪽으로 개폐되며, 비차열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기타 방화문	▪ 문 양면에 철강재료 외 재료를 사용한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수직 차열 방화셔터	▪ 슬랫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며, 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
	수직 비차열 방화셔터	▪ 슬랫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며,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
	수평 차열 방화셔터	▪ 슬랫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

☞ 뒷면에 계속

	수평 비차열 방화셔터	▪ 슬랫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며,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
	기타 방화셔터	▪ 슬랫에 철강재료 외 재료를 사용한 방화셔터
승강기문	좌우개폐 차열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좌우로 개폐되며, 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문
	좌우개폐 비차열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좌우로 개폐되며,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문
	상하개폐 차열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상하로 개폐되며, 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문
	상하개폐 비차열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상하로 개폐되며,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문
	소형 차열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소형 화물을 나르는 데 사용되며, 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문
	소형 비차열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소형 화물을 나르는 데 사용되며,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승강기문
	기타 승강기문	▪ 문에 철강재료 외 재료를 사용한 승강기문

■ 내화채움구조 품목	
품 목	내 용
금속관 설비관통부	▪ 금속소재 관이 관통하는 설비관통부 내화채움재
비금속관 설비관통부	▪ 비금속소재 관이 관통하는 설비관통부 내화채움재
케이블 설비관통부	▪ 전선(케이블, 케이블트레이)이 관통하는 설비관통부 내화채움재
버스덕트 설비관통부	▪ 버스덕트가 관통하는 설비관통부 내화채움재
바닥-바닥 선형조인트	▪ 바닥판 간의 선형조인트 내화채움재
바닥-커튼월 선형조인트	▪ 바닥과 커튼월의 선형조인트 내화채움재
벽상부 선형조인트	▪ 내화구조 벽 상부의 선형조인트 내화채움재
벽-벽 선형조인트	▪ 내화구조 벽 간의 선형조인트 내화채움재
기타 내화채움구조	▪ 기타 내화채움재

[별표 2]

건축자재등의 주요 재료·제품

■ 내화구조 품목	
품 목	주요 재료·제품
도료피복 철골 보 BP : Beam of Paint system	▪ 도료
도료피복 합성 보 CBP : Composite Beam of Paint system	▪ 도료
뿜칠피복 철골 보 BS : Beam of Spary-on system	▪ 뿜칠재
뿜칠피복 합성 보 CBS : Composite Beam of Spray-on system	▪ 뿜칠재
보드피복 철골 보 BB : Beam of Board system	▪ 강성을 가진 판 (석고보드, 시멘트판 등)
구조용 집성재 보 BT : Beam of structural glued-laminated Timber	▪ 구조용 집성재
목재보 BL : Beam of Lumber	▪ 목재
섬유블랭킷 피복 철골 보 BF : Beam of Fiber blanket system	▪ 단열재 (세라크울,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도료피복 철골 기둥 CP : Column of Paint system	▪ 도료
도료피복 합성 기둥 CCP : Composite Column of Paint system	▪ 도료
뿜칠피복 철골 기둥 CS : Column of Spary-on system	▪ 뿜칠재
뿜칠피복 합성 기둥 CCS : Composite Column of Spray-on system	▪ 뿜칠재
보드피복 철골 기둥 CB : Column of Board system	▪ 강성을 가진 판 (석고보드, 시멘트판 등)
구조용 집성재 기둥 CT : Column of structural glued-laminated Timber	▪ 구조용 집성재
목재기둥 CL : Column of Lumber	▪ 목재
섬유블랭킷 피복 철골 기둥 CF : Column of Fiber blanket system	▪ 단열재 (세라믹울,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 뒷면에 계속

스터드 벽체 WS : Wall of Stud	▪ 샛기둥(Stud)에 부착하는 강성을 가진 판 (석고보드, 시멘트판 등)
콘크리트패널 벽체 WC : Wall of Concrete panel	▪ 발포폴리스티렌 경량콘크리트복합패널,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 압출성형 경량콘크리트패널 등 콘크리트 패널
건축용 철강재 벽체 WP : Wall of steel Panel	▪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벽판
건축용 보드류 벽체 WB : Wall of Board panel	▪ 양면에 강성을 가진 판을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벽판
유리벽체 WG : Wall of Glazed elements	▪ 내화성능을 가진 유리 (프레임 제작 포함)
경골목구조 바닥/천정 FW : Floor/ceiling assemblies of light-frame Wood structures	▪ 목조프레임에 부착하는 강성을 가진 판 (석고보드, 시멘트판 등)
데크 바닥 SD : Slab of Deck plate system	▪ 데크플레이트
건축용 철강재 지붕 RP : Roof of steel Panel	▪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지붕판
건축용 시스템 지붕 RS : metal Roofing System	▪ 양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단열재를 사용한 지붕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시공하는 지붕
구조용 직교 집성판 벽 WCLT : Wall of Cross Laminated Timber	▪ 구조용 직교 집성판
구조용 직교 집성판 바닥 FCLT : Floor of Cross Laminated Timber	▪ 구조용 직교 집성판
기타 내화구조 OS : Other System	▪ 신청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결정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목**

품 목	주요 재료 · 제품
불연 유기질 우레탄 NUM : Nonflammable Urethane Insulating Material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불연재료인 우레탄 심재
불연 유기질 EPS NEM : Nonflammable EPS(Expandable Polystyrene) Insulating Material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불연재료인 EPS 심재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NGM : Nonflammable Glasswool Insulating Material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불연재료인 그라스울 심재
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NMM : Nonflammable Mineralwool Insulating Material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불연재료인 미네랄울 심재

☞ 뒷면에 계속

기타 불연 마감재 ONM : Ohter Nonflammable Insulating Material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불연재료인 기타 불연 심재
준불연 유기질 우레탄 IUM : Incombustible Urethane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우레탄 심재
준불연 유기질 EPS IEM : Incombustible EPS(Expandable Polystyrene)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EPS 심재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IGM : Incombustible Glasswool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그라스울 심재
준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IMM : Incombustible Mineralwool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미네랄울 심재
내부용 준불연 유기질 우레탄 IIUM : Indoor Incombustible Urethane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우레탄 심재
내부용 준불연 유기질 EPS IIEM : Indoor Incombustible EPS(Expandable Polystyrene)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EPS 심재
내부용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IIGM : Indoor Incombustible Glasswool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그라스울 심재
내부용 준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IIMM : Indoor Incombustible Mineralwool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미네랄울 심재
기타 준불연 마감재 OIM : Ohter Incombustible Insulating Material	▪ 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기타 준불연 심재
내부용 기타 준불연 마감재 IOIM : Indoor Ohter Incombustible Insulating Material	▪ (준)불연재료인 양면(강판류), (준)불연재료인 기타 준불연 심재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목

품 목		주요 재료 · 제품
방화문	60분+ 편개 방화문 ISD : Insulated Single Fire Door	▪ 편개 문짝, 문틀
	60분 편개 방화문 NSD : Non-Insulated Single Fire Door of 60 min	▪ 편개 문짝, 문틀
	30분 편개 방화문 NSDH : Non-Insulated Single Fire Door of 30 min	▪ 편개 문짝, 문틀
	60분+ 양개 방화문 IDD : Insulated Double Fire Door	▪ 양개 문짝, 문틀
	60분 양개 방화문 NDD : Non-Insulated Double Fire Door of 60 min	▪ 양개 문짝, 문틀

☞ 뒷면에 계속

	30분 양개 방화문 NDDH : Non-Insulated Double Fire Door of 30 min	▪ 양개 문짝, 문틀
	기타 방화문 OTD : Other Type Fire Door	▪ 제품의 면을 이루는 재료・제품, 문틀
자동 방화 셔터	수직 차열 방화셔터 IVS : Insulated Vertical Fire Shutter	▪ 방화셔터 슬랫, 가이드레일
	수직 비차열 방화셔터 NVS : Non-Insulated Vertical Fire Shutter	▪ 방화셔터 슬랫, 가이드레일
	수평 차열 방화셔터 IHS : Insulated Horizontal Fire Shutter	▪ 방화셔터 슬랫, 가이드레일
	수평 비차열 방화셔터 NHS : Non-Insulated Horizontal Fire Shutter	▪ 방화셔터 슬랫, 가이드레일
	기타 방화셔터 OTS : Other Type Fire Shutter	▪ 제품의 면을 이루는 재료・제품, 가이드레일
승강기 문	좌우개폐 차열 승강기문 ISED : Insulated Sliding Elevator Fire Door	▪ 좌우개폐 문짝, 삼방틀(잠)
	좌우개폐 비차열 승강기문 NSED : Non-Insulated Sliding Elevator Fire Door	▪ 좌우개폐 문짝, 삼방틀(잠)
	상하개폐 차열 승강기문 IUED : Insulated Up & Down Elevator Fire Door	▪ 상하개폐 문짝, 삼방틀(잠)
	상하개폐 비차열 승강기문 NUED : Non-Insulated Up & Down Elevator Fire Door	▪ 상하개폐 문짝, 삼방틀(잠)
	소형 차열 승강기문 IDWD : Insulated Dumb Waiter Fire Door	▪ 소형 문짝, 삼방틀(잠)
	소형 비차열 승강기문 NDWD : Non-Insulated Dumb Waiter Fire Door	▪ 소형 문짝, 삼방틀(잠)
	기타 승강기문 OTED : Other Type Elevator Fire Door	▪ 제품의 면을 이루는 재료・제품, 삼방틀(잠)

※ 신청자는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 단. 주요재료・제품 중 문틀, 가이드레일, 삼방틀(잠)에 대하여 신청자가 품질관리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위탁생산 할 수 있음.
※ 주요재료・제품의 원재료(스크린, 유리 등)만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조건에서 제외함.
※ 방화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름.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
-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은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뒷면에 계속

■ 내화채움구조 품목

품 목	주요 재료 · 제품
금속관 설비관통부 MP : Metallic Pipes/duct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비금속관 설비관통부 NP : Non-metallic Pipes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케이블 설비관통부 CA : CAble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버스덕트 설비관통부 BD : BusDuct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바닥-바닥 선형조인트 FF : Floor to Floor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바닥-커튼월 선형조인트 FC : Floor to Curtain wall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벽상부 선형조인트 HW : Head of Wall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벽-벽 선형조인트 WW : Wall to Wall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기타 내화채움구조 OS : Other System	▪ 내화채움구조 구성 재료 · 제품 중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막형성(발포재료 포함) 재료 · 제품

※ 내화채움구조 주요 재료 · 제품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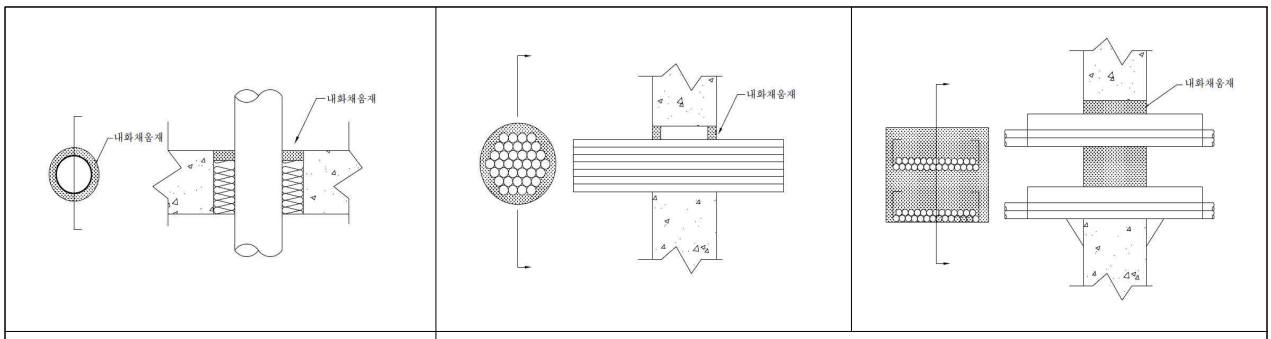

금속관 / 비금속관 설비관통부	케이블 설비관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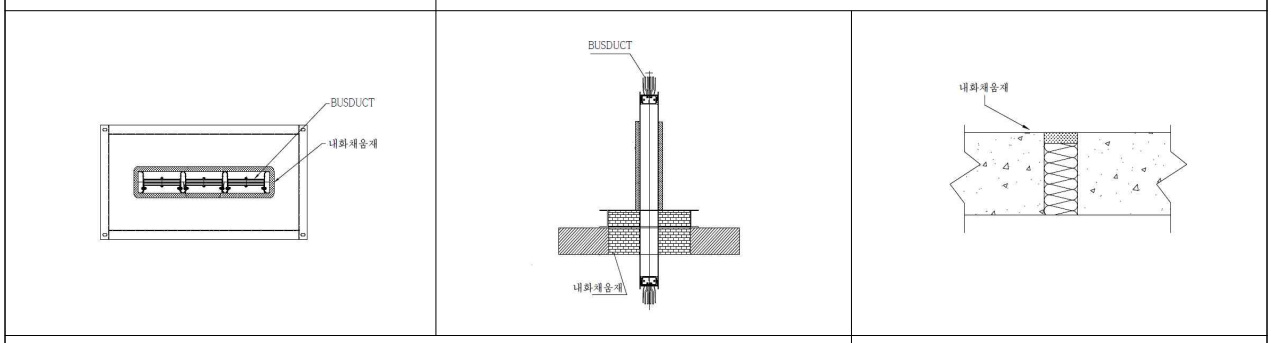

버스덕트 설비관통부	바닥-바닥 선형조인트

☞ 뒷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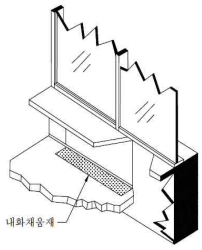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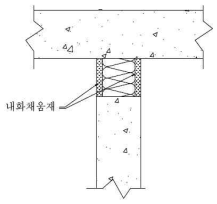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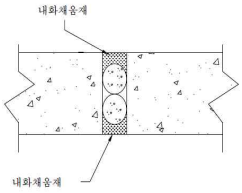
바닥-커튼월 선형조인트	벽상부 선형조인트	벽-벽 선형조인트

※ 기타 내화채움구조는 신청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결정.
※ 내화채움구조 중 세라믹 섬유 블랭킷(KS L 9104), 그라스울·미네랄울(KS L 9102),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KS M 3808),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 고무발포단열재(KS M 6962) 등은 주요 재료 · 제품에서 제외

[별표 3]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

1. 신청자 자격사항
점검항목
1.1 관리기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등 인정신청서에 관리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 【관리기준 제4조제1항】
1.2 신청자가 건축자재별 품목 및 주요 재료·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인가 【관리기준 제4조제3항 및 지침 제4조제1항】
1.3 신청자가 시공업자로 지침 제4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 【관리기준 제4조제3항】
1.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으로 인정신청한 적이 있는가 【관리기준 제5조제1항】
1.5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인정 취소된 적이 있는가 【관리기준 별표 2】
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나. 관리기준 별표2의 제3호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개선 등의 경미한 사항을 개선요청 받아 일시정지 되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6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아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적이 있는가 【관리기준 별표 2】
가. 일시정지 중인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나. 관리기준 별표2의 제2호 인정업체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여 일시정지 되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7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적이 있는가 【관리기준 별표 2】
가. 신청 또는 인정 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품질시험을 합격한 후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나.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다. 인정받지 않은 일반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라. 인정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1.8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관리기준 제6조제2항2호에 의해 인정신청을 반려 은 적이 있는가 【관리기준 제5조제3항】
1.9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관리기준 제6조제2항제4호에 의해 인정신청을 반려 받은 적이 있는가 【관리기준 제5조제3항】
1.10 건축자재등의 인정을 받은 자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하였는가 【관리기준 제5조제5항】
가. 관리기준 제8조에 따른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관리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다. 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 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로부터 결과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 뒷면에 계속

2. 추가검토사항 Ⅰ (공동신청)
점검항목
2.1 공동신청의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설명서 등을 갖추고 있는가 【관리기준 제4조제5항】
2.2 공동신청의 경우, 인정신청구조 또는 제품이 동일한 원재료 및 품질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고, 공통의 설계도서와 품질관리 설명서가 제출되었는가 【지침 제4조제4항】
3. 추가검토사항 Ⅱ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재료 · 제품의 경우)
점검항목
두 가지 이상의 주요재료·제품이 복합된 구조의 경우, 구성하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 중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관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지침 제15조제1항】
4. 추가검토사항 Ⅲ (대리신청)
점검항목
대리신청의 경우, 국외에 소재한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자인가 【지침 제4조제6항】
5. 추가검토사항 Ⅳ (시공자)
점검항목
시공자의 경우, 해당 시공현장별로 건축자재등 공사착공 전에 건축자재등 인정을 신청하였는가 【관리기준 제4조제4항】

[별표 4]

건축자재등의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 내화구조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품 목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내화시험	부가시험 (내구성 및 안전성)	부가시험 (일반관리)
도료피복 철골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부착강도, 가스유해성	▪ 제품의 성분분석
도료피복 합성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KS F 2257-6 중에 재하시험, 부착강도, 가스유해성	▪ 제품의 성분분석
뿜칠피복 철골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부착강도, 밀도	▪ 제품의 성분분석
뿜칠피복 합성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KS F 2257-6 중에 재하시험, 부착강도, 밀도	▪ 제품의 성분분석
보드피복 철골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보드류의 휨 시험, 가스유해성	-
구조용 집성재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KS F 2257-6 중에 재하시험	▪ 목재의 수종감정 (육안 및 현미경적 식별방법 외)
목재보	▪ KS F 2257-1 ▪ KS F 2257-6	▪ KS F 2257-6 중에 재하시험, 함수율	▪ 목재의 수종감정 (육안 및 현미경적 식별방법 외)
섬유블랭킷 피복 철골 보	▪ KS F 2257-1 ▪ KS F 2257-6	▪ 밀도	-
도료피복 철골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부착강도, 가스유해성	▪ 제품의 성분분석
도료피복 합성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KS F 2257-7 중에 재하시험, 부착강도, 가스유해성	▪ 제품의 성분분석
뿜칠피복 철골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부착강도, 밀도	▪ 제품의 성분분석
뿜칠피복 합성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KS F 2257-7 중에 재하시험, 부착강도, 밀도	▪ 제품의 성분분석
보드피복 철골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보드류의 휨 시험, 가스유해성	-
구조용 집성재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KS F 2257-7 중에 재하시험	▪ 목재의 수종감정(육안 및 현미경적 식별방법 외)
목재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KS F 2257-7 중에 재하시험, 함수율	▪ 목재의 수종감정(육안 및 현미경적 식별방법 외)
섬유블랭킷 피복 철골 기둥	▪ KS F 2257-1 ▪ KS F 2257-7	▪ 밀도	-

☞ 뒷면에 계속

스터드 벽체	▪ KS F 2257-1 ▪ KS F 2257-4, 8	▪ 보드류의 휨 파괴하중 또는 휨강도, 가스유해성	-
콘크리트패널 벽체	▪ KS F 2257-1 ▪ KS F 2257-8	▪ 휨강도	-
건축용 철강재 벽체	▪ KS F 2257-1 ▪ KS F 2257-8	▪ 벽판의 분포압강도, 가스유해성	▪ 단위면적당 중량
건축용 보드류 벽체	▪ KS F 2257-1 ▪ KS F 2257-8	▪ 벽판의 분포압강도, 가스유해성	▪ 단위면적당 중량
유리벽체	▪ KS F 2845	▪ 가열후 충격시험 ▪ 가스유해성	-
경골목구조 바닥/천정	▪ KS F 2257-1 ▪ KS F 2257-5	▪ KS F 2257-5 중에 재하시험	-
데크 바닥	▪ KS F 2257-1 ▪ KS F 2257-5	▪ KS F 2257-5 중에 재하시험	-
건축용 철강재 지붕	▪ KS F 2257-1 ▪ KS F 2257-5	▪ 지붕판의 분포압강도, 가스유해성	▪ 단위면적당 중량
건축용 시스템 지붕	▪ KS F 2257-1 ▪ KS F 2257-5	▪ 지붕판의 분포압강도, 가스유해성	▪ 단위면적당 중량
구조용 직교 집성판 벽체	▪ KS F 2257-1 ▪ KS F 2257-4 ▪ KS F 2257-8	▪ KS F 2257-4 중에 재하시험	▪ 목재의 수종감정 (육안 및 현미경적 식별방법 외)
구조용 직교 집성판 바닥	▪ KS F 2257-1 ▪ KS F 2257-5	▪ KS F 2257-5 중에 재하시험	▪ 목재의 수종감정 (육안 및 현미경적 식별방법 외)

※ 부가시험(일반관리)의 결과는 인정 관리 및 현장품질관리 확인시 활용함.
※ 다음의 경우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인 경우, 해당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가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시험결과가 확인된 경우
- 강판과 심재(그라스울, 미네랄울, 세라믹울)로 제작된 '건축용 철강재 벽체', '건축용 철강재 지붕' 및 '건축용 시스템 지붕'의 가스유해성
- 석고보드의 가스유해성

※ 기타 내화구조는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정함.
※ 구조용 직교 집성판 벽체의 경우, KS F 2257-8에 따른 비내력 시험 수행시 차염성 및 차열성 적합 여부를 확인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품 목	실물모형시험 및 난연시험
불연 유기질 우레탄	▪ KS F ISO 1182, KS F 2271
불연 유기질 EPS	
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기타 불연 마감재**	

☞ 뒷면에 계속

준불연 유기질 우레탄	▪ KS F ISO 13784-1, KS F 8414, KS F 5660-1*, KS F 2271
준불연 유기질 EPS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준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기타 준불연 마감재**	
내부용 준불연 유기질 우레탄	▪ KS F ISO 13784-1, KS F 5660-1*, KS F 2271
내부용 준불연 유기질 EPS	
내부용 준불연 무기질 그라스울	
내부용 준불연 무기질 미네랄울	
내부용 기타 준불연 마감재**	

* 관련고시 제24조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불연 마감재, 기타 준불연 마감재, 내부용 기타 준불연 마감재의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자재의 성능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추가시험 등)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KS인증제품인 경우, 해당 KS규격과 중복되는 부가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시험결과가 확인된 경우
※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물모형시험은 최소 및 최대두께에 대해 시험하고 인정범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제품의 두께가 50㎜ 이하인 경우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하고, 제품의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로 감소시켜 시험한다. (두께가 50㎜를 초과하는 복수의 제품이 밀도가 균질하고 배합비율이 동일하다면 50㎜ 하나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준불연 복합자재 심재가 불연인 경우, 해당 심재는 기준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품 목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내화시험 (차열)	내화시험 (비차열)	부가시험
방화문		▪ KS F 2268-1의 차염성, 차열성 ▪ KS F 2845의 차염성, 차열성 (해당 시)	▪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 KS F 2845의 차염성 중 b), c) (해당 시)	▪ KS F 2846의 차연성능 ▪ KS F 3109의 방화문 필수 시험항목 중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 KS L 2006의 내충격성능 (해당 시)
자동방화셔터	수직	▪ KS F 2268-1의 차염성, 차열성	▪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 KS F 2846의 차연성능 ▪ KS F 4510의 개폐성능 ▪ KS L 2006의 내충격성능 (해당 시)
	수평	▪ KS F 2257-5의 시험조건에 따름 ▪ KS F 2268-1의 차염성, 차열성	▪ KS F 2257-5의 시험조건에 따름 ▪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 KS F 2846의 차연성능 ▪ KS F 4510의 개폐성능
승강기문		▪ KS F 2268-1의 차염성, 차열성	▪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
부속품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방화문	도어록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 단독시험 시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 뒷면에 계속

		디지털도어록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 KS C 9806의 화재시 대비시험 및 내화형 인증제품 ▪ 단독시험 시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KS C 9806의 화재시 대비시험
		도어클로저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 단독시험 시 KS F 2268-1의 차염성 중 b), c), d) ▪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 시험
		개스킷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유리 관측창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작아지는 것은 인정)
		차압측정공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작아지는 것은 인정)
		피벗힌지	▪ 방화문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단일금속 재료는 형태변경 가능)
		경첩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 시험체와 동일한 재질은 형태, 크기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예) 도어록(디지털도어록 포함)의 손잡이, 개폐장치의 형상 등
		방화핀(캡)	
		단일금속재 부속품	
자동방화셔터	수직	모터 등	▪ 셔터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 단독시험 시 KS F 2268-1의 차염성 중 d)
	수평		▪ 셔터 품질시험 시 성능확인 ▪ 단독시험 시 KS F 2257-5의 시험조건에 따르며, KS F 2268-1의 차염성 중 d)

※ 인정을 위한 품질시험 시 포함된 부속품은 인정제품에 부착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외의 부속품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에 따라 인정성능시간 이상 내화시험에 적합해야함.
※ 신 재료·제품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함.

■ 내화채움구조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품 목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내화시험	부가시험
금속관 설비관통부	▪ KS F 2257-1 ▪ KS F ISO 10295-1	-
비금속관 설비관통부		
케이블 설비관통부		
버스덕트 설비관통부		
바닥-바닥 선형조인트		
바닥-커튼월 선형조인트		
벽상부 선형조인트		
벽-벽 선형조인트		
기타 내화채움구조		

※ 배관 단열재는 가스유해성 시험성적서(KS F 2271)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내화채움구조 중 세라믹 섬유 블랭킷(KS L 9104), 그라스울·미네랄울(KS L 9102) 등은 가스유해성 생략 가능

[별표 5]

건축자재별 안전율 및 인정단위 적용 방법

건축자재등 구분		적용 내용 (안전율)	인정 단위
내화구조	내화도료	▪ 인정 피복두께는 신청두께 이상으로 하되, 시험체 제작시 확인된 두께보다 10%까지 증가	0.05㎜
	뿜칠		1㎜
	목재, 구조용집성재	▪ 인정 탄화두께는 시험체의 실측 탄화두께보다 10%까지 증가	1㎜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승강기문은 인정신청한 시간의 10분 이상 화재안전성능 확인 (예시 : 60분 신청 시 70분 이상의 성능 확인 후 60분 제품으로 인정함) ▪ 차열성능은 신청한 시간의 5분 이상 화재안전성능 확인 (예시 : 30분 신청 시 35분 이상의 성능 확인 후 30분 제품으로 인정함)	30분

[별표 6]

내화구조 표준의 선정 절차

[별표 7]

건축자재등 표준 심사표

구 분	심사 내용
구조의 타당성	▪ 해당내화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인정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내화시험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 ▪ 복수의 업체가 인정을 받은 구조로 내화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인정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내화시험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 ▪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며, 시공된 구조는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공통)
구조의 유효성	▪ 일반화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재료 및 구조체	▪ 구조를 구성하는 주 구성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또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가능한지 여부 ▪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하여져 있거나, 이 수준 이상의 타당한 방법으로 정하여져 있는지의 여부
구조설명도	▪ 구조를 파악하고 쉽게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의 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
시방서	▪ 주 구성재료의 구성과 물성, 시공방법 설명 등이 건축공사장에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별표 8]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표준의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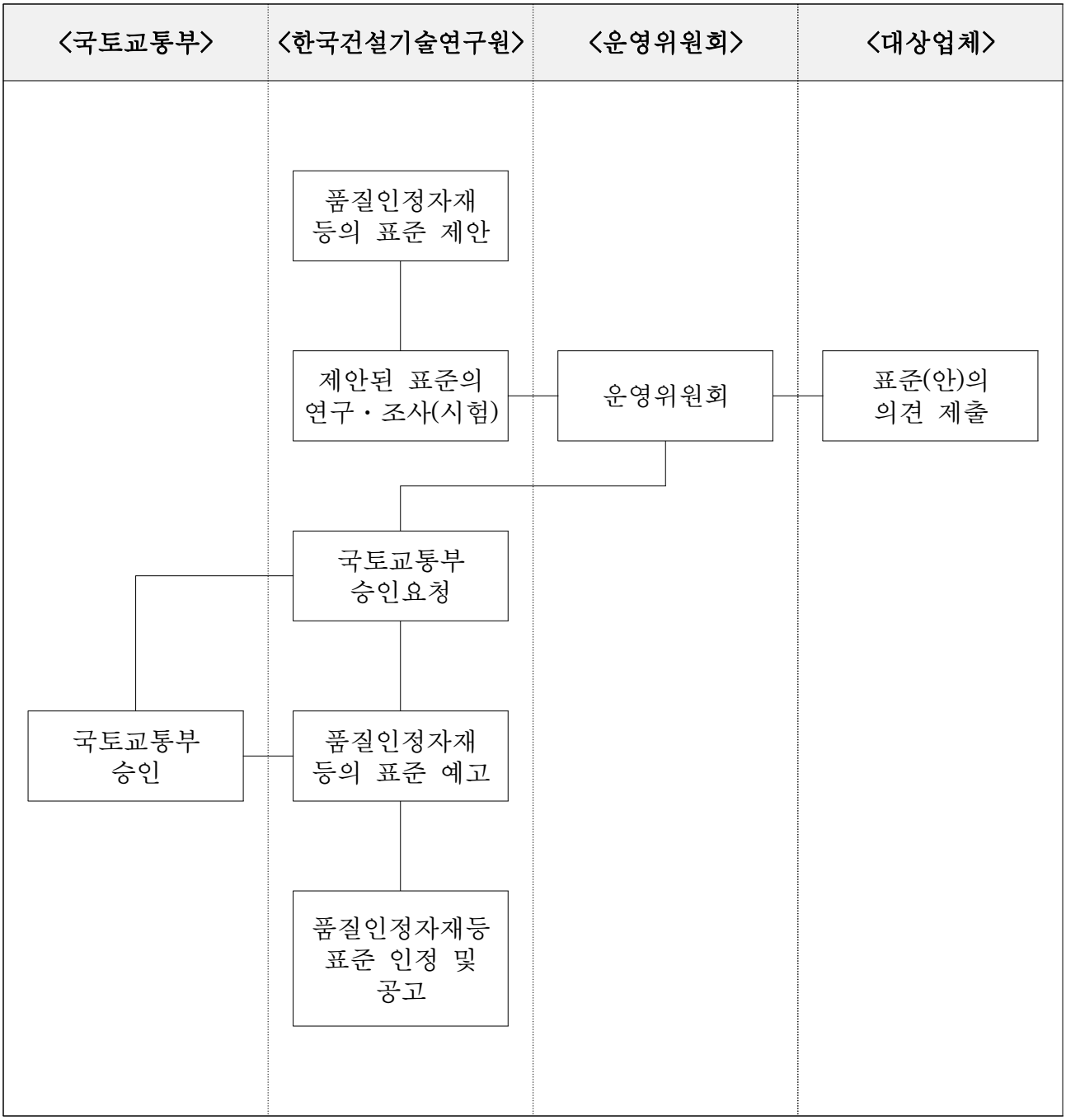

[별표 9]

건축자재등의 인정번호 부여방법

■ 내화구조 : FR

F R - □ □ □ 2 2 - 0 1 0 1 - 1
㉮ ㉯ ㉰ ㉱ ㉲ ㉳

㉮ : 건축자재별 구분표시 2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한다. (FR : Fire Resistant)
㉯ : 인정품목별 구분표시 2~3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하며, [별표 2]에 따른다.
㉰ :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원장이 해당일자에 내화구조 인정서를 발급하는 순번을 명시한다.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 FF

F F - □ □ □ 2 2 - 0 1 0 1 - 1
㉮ ㉯ ㉰ ㉱ ㉲ ㉳

㉮ : 건축자재별 구분표시 2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한다. (FF: Fire Finishing)
㉯ : 인정품목별 구분표시 3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하며, [별표 2]에 따른다.
㉰ : 복합자재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복합자재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복합자재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원장이 해당일자에 복합자재의 인정서를 발급하는 순번을 명시한다.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FDS

F D S - □ □ □ 2 2 - 0 1 0 1 - 1
㉮ ㉯ ㉰ ㉱ ㉲ ㉳

㉮ : 건축자재별 구분표시 3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한다. (FDS : Fire Door or Shutter)
㉯ : 인정품목별 구분표시 3~4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하며, [별표 2]에 따른다.
㉰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원장이 해당일자에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서를 발급하는 순번을 명시한다.

☞ 뒷면에 계속

■ 내화채움구조 : FS

F S	-	□ □	2 2	-	0 1	0 1	-	1
㉮		㉯	㉰		㉱	㉲		㉳

㉮ : 내화채움구조를 표시하는 영문 2자리를 명시한다. (FS : FireStop)
㉯ : 인정품목별 구분표시 2자리를 영문대문자로 명시하며, [별표 2]에 따른다.
㉰ : 내화채움구조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내화채움구조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내화채움구조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원장이 해당일자에 내화채움구조 인정서를 발급하는 순번을 명시한다.

■ 품질인정자재등의 표준 : KCMS

K C M S	-	□ □	2 2	-	0 1	0 1	-	1
㉮		㉯	㉰		㉱	㉲		㉳

㉮ : 품질인정자재등 표준을 표시하는 영문대문자 4자리를 명시한다. (KCMS : KICT Certified Material Standard)
㉯ : 품질인정자재명 (예 : 내화구조 ➜ Fire-resistant : FR)
㉰ : 품질인정자재등 표준으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품질인정자재등 표준으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품질인정자재등 표준으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품질인정자재별 표준 제정 순번을 명시한다.

[별표 10]

건축자재 인정업무 수수료 환불률

구 분		환 불 률
신규	시료채취 이전	납부수수료의 68 %
	시료채취 이후	납부수수료의 35 %
연장	시료채취 이전	납부수수료의 86 %
	시료채취 이후	납부수수료의 15 %
※ 품질시험이 진행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신청 내용 변경 요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제조현장(공장)소재지(등록주소)	전자우편주소

변경대상	[ ]내화구조 [ ]복합자재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인정신청일 및 신청 문서 번호 20○○년 ○○월 ○○일 [문서번호 :]
	구조·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ㅇ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1회에 한함)	
	ㅇ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제조·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ㅇ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 내용 작성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신청 내용을 변경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점검에 따른 [□보완 □개선] 요청서

요청일 :

요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정)업체	소속	직급	성명	(인)

[□보완 □개선] 요청 내용	
1. 원재료 품질관리	▪ -
2. 제조공정 품질관리	▪ -
3. 제품 품질관리	▪ -
4. 제조설비 관리	▪ -
5. 검사설비 관리	▪ -
6.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 -
7. 기타	▪ -

제출기한	1. 보완 요청일로부터 90일(1회당 30일 이내) 이내에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6조제2항제2호 의거, 신청이 반려됩니다. 2. 개선 요청일로 30일 이내에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별표 2]제3호 3-1에 의거, 인정이 일시정지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시료채취 확인서

신청업체		신청구조 또는 제품	
건축자재 구분	☐ 내화구조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채취구분	☐ 내화시험용 ☐ 부가시험용 ☐ 기타		

1. 채취장소	제조현장 또는 건축공사장명			
	주 소			
	전화번호			
2. 시료채취 시 확인사항 (배합비, 공정 등)				
3. 시료채취	채취내용	시료종류	규격	채취수량
	봉인방법			
	봉인서명			
4. 채취시료의 보관 및 이동방법				
5. 시료 채취일				
6. 희망 품질시험기관		1) 2)		
7. 시료채취과정 사진		별첨		

시료채취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별표 4]의 건축자재별 품질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에 '내화시험', '실물모형시험 및 난연시험', '부가시험'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 대상이 되며, 동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신청자가 1차로 희망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내용 및 시료 변경이 불가**함을 상기 시료채취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건축자재등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 내화구조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1. 신청자

○ 회사명 :

○ 주 소 :

○ 접수일자 :

※ 접수일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신청 구조 또는 제품에 대해 품질자료 송부한 일자로 함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구조명 또는 제품명

3. 시험일자 :

4. 시험기관 및 장소 :

5. 시험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 (공인시험기관 인정번호 :)

6. 시험환경 :

○ 온도 : (±) ℃, 습도 : (±) % R.H.

7. 시험결과 :

※ 각 자재별 해당품목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결과를 명기
※ 시험체 도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부자료에 시험체 도면이 있을 경우 생략가능), 시험체사진 및 시험결과 측정치 등을 첨부
※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체 확인서(시험체 확인 기록 내용과 제작 일지 포함) 첨부

■ 내화구조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인정 품목	작 성 내 용					
	항 목	검사기준	구 분			시험결과
도료피복 철골 보 도료피복 합성 보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두께(㎜) ※ 비재하 피복두께로만 평균두께 계산	~ (신청두께/1.1~ 신청두께)	A			㎜
			B			㎜
			평균			㎜
	부착강도(MPa)	이상	A			MPa
			B			MPa
			C			MPa
			평균			MPa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제품의 성분분석					
	변형량(㎜)	㎜ 이하	A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뿜칠피복 철골 보 뿜칠피복 합성 보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두께(㎜) ※ 비재하 피복두께로만 평균두께 계산	~ (신청두께/1.1~ 신청두께)	A			㎜
			B			㎜
			평균			㎜
	부착강도(MPa)	이상	A			MPa
			B			MPa
			C			MPa
			평균			MPa
	밀도(kg/㎥)	이상	A			kg/㎥
			B			kg/㎥
			C			kg/㎥
			평균			kg/㎥
	제품의 성분분석					
	변형량(㎜)	㎜ 이하	A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 뒷면에 계속

보드피복 철골 보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휨파괴하중 길이방향	N 이상	A			N
			B			N
			C			N
	휨파괴하중 너비방향	N 이상	A			N
			B			N
			C			N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구조용 집성재 보	변형량(㎜)	㎜ 이하	A			㎜
			B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B			㎜/min
	탄화두께(㎜)	-	A			㎜
			B			㎜
	수종감정		A			
목재 보	변형량(㎜)	㎜ 이하	A			㎜
			B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B			㎜/min
	탄화두께(㎜)	-	A			㎜
			B			㎜
	수종감정		A			
	함수율(%)	이하				%
섬유블랭킷 철골 보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최고		℃
	밀도(kg/㎥)	이상	A			kg/㎥
			B			kg/㎥
			C			kg/㎥
			평균			kg/㎥

☞ 뒷면에 계속

도료피복 철골 기둥 도료피복 합성 기둥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두께(㎜) ※ 비재하 피복두께로만 평균두께 계산	~ (신청두께/1.1~ 신청두께)	A			㎜
			B			㎜
			평균			㎜
	부착강도(MPa)	이상	A			MPa
			B			MPa
			C			MPa
			평균			MPa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제품의 성분분석					
	수축량(㎜)	㎜ 이하	A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뿜칠피복 철골 기둥 뿜칠피복 합성 기둥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두께(㎜) ※ 비재하 피복두께로만 평균두께 계산	~ (신청두께/1.1~ 신청두께)	A			㎜
			B			㎜
			평균			㎜
	부착강도(MPa)	이상	A			MPa
			B			MPa
			C			MPa
			평균			MPa
	밀도(kg/㎥)	이상	A			kg/㎥
			B			kg/㎥
			C			kg/㎥
			평균			kg/㎥
	제품의 성분분석					
	수축량(㎜)	㎜ 이하	A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 뒷면에 계속

보드피복 철골 기둥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휨파괴하중 길이방향	N 이상	A			N
			B			N
			C			N
	휨파괴하중 너비방향	N 이상	A			N
			B			N
			C			N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구조용 집성재 기둥	수축량(㎜)	㎜ 이하	A			㎜
			B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B			㎜/min
	탄화두께(㎜)	-	A			㎜
			B			㎜
	수종감정		A			
목재 기둥	수축량(㎜)	㎜ 이하	A			㎜
			B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B			㎜/min
	탄화두께(㎜)	-	A			㎜
			B			㎜
	수종감정		A			
	함수율(%)	이하				%
섬유블랭킷 철골 기둥	내화 시험 (OO 분)	평균온도 538 ℃이하	A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평균온도 538 ℃이하	B	평균	1단면	℃
					2단면	℃
		최고온도 649 ℃이하			3단면	℃
					4단면	℃
				최고		℃
	밀도(kg/㎥)	이상	A			kg/㎥
			B			kg/㎥
			C			kg/㎥
			평균			kg/㎥

☞ 뒷면에 계속

스터드벽체	내화 시험 (OO 분)	초기온도		A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초기온도		B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휨파괴하중 길이방향	N 이상		A		N
				B		N
				C		N
	휨파괴하중 너비방향	N 이상		A		N
				B		N
				C		N
콘크리트패널벽체	내화 시험 (OO 분)	초기온도		A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초기온도		B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휨강도(N/㎡)	이상		A		N/㎡
				B		N/㎡
				C		N/㎡
건축용철강재벽체	내화 시험 (OO 분)	초기온도		A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초기온도		B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휨강도(N/㎡)	이상		A		N/㎡
				B		N/㎡
				C		N/㎡
	단위면적당중량(kg/㎡)	이상				kg/㎡
건축용보드류벽체	내화 시험 (OO 분)	초기온도		A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초기온도		B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휨강도(N/㎡)	이상		A		N/㎡
				B		N/㎡
				C		N/㎡
	단위면적당중량(kg/㎡)	이상				kg/㎡

☞ 뒷면에 계속

유리벽체	내화 시험 (OO 분)	초기온도		A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초기온도		B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충격시험	방화상 유해한 파괴, 박리, 탈락 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		A		
				B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경골목구조 바닥/천정	변형량(㎜)	㎜ 이하		A		㎜
				B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B		㎜/min
데크바닥	변형량(㎜)	㎜ 이하		A		㎜
				B		㎜
	변형률(㎜/min)	㎜/min이하		A		㎜/min
				B		㎜/min
건축용철강재지붕 건축용시스템지붕	내화 시험 (OO 분)	초기온도		A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초기온도		B	초기온도(℃)	℃
		평균	℃ 이하		평균(℃)	℃
		최고	℃ 이하		최고(℃)	℃
	하중지지력	변형량	㎜ 이하	A		㎜
		변형율	㎜/min이하			
		변형량	㎜ 이하	B		㎜
		변형율	㎜/min이하			
	단위면적당중량(kg/㎡)	이상				kg/㎡
	분포압강도(N/㎡)	이상		A		N/㎡
				B		N/㎡
				C		N/㎡
	가스유해성(min)	이상		A		min
				B		min

☞ 뒷면에 계속

■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인정 품목	작 성 내 용							
	항 목		시험결과					
불연 복합자재	불연성 시험 (KS F ISO 1182)		시험체 번호		1		2	3
			최고온도 최종평형 온도 20K 이하 (20 min.)					
			질량 감소율 (30% 이하)					
	가스유해성 (KS F 2271)		평균행동정지 시간 (m, s) (9 min. 이상)					
준불연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시험 (KS F ISO 13784-1)		불꽃 발생 및 개구부 화염 분출 여부			바닥 열량계 열량(㎾/㎡)		
			발생 유무	(유 / 무)		열량(㎾/㎡)		
			위치			시간(m, s)		
			천정 온도			바닥 발화		
			평균/최고 온도(℃)			발생 유무		(유 / 무)
			초과 시간 (m, s)			발화 시간 (m, s)		
	화재안전성능 시험 (KS F 8414)	주벽	내부/단열재	센서위치 TC- 1~5 (TC point) (℃)		외부	센서위치 TC- 10~15 (TC point) (℃)	
				최고온도(℃)			최고온도(℃)	
				시간(m, s)			시간(m, s)	
		추가 센서위치(필요시)(℃)						
		측벽	내부/단열재	센서위치 TC- 6~8 (TC point)		외부	센서위치 TC- 16~18 (TC point)	
				최고온도(℃)			최고온도(℃)	
				시간(m, s)			시간(m, s)	
	연소성능 시험 (KS F 5660-1)		시험체 번호		1		2	3
			총열방출률 (8 MJ/㎡ 이하)					
			열방출률이 200 kW/㎡를 연속하여 초과한 시간 (s) (10 s 이하)					
			시험체의 전부 용융, 관통하는 균열 및 구멍 등의 변화 (시험체의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가스유해성 (KS F 2271)		평균행동정지 시간 (m, s) (9 min. 이상)					

☞ 뒷면에 계속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인정품목	항목			검사기준		시험결과	
						시험체 A	시험체 B
방화문	내화시험	차열	차열성	문짝 평균상승온도	140 ℃ 이하		
				문짝 최고상승온도	180 ℃ 이하		
				문틀 최고상승온도	360 ℃ 이하		
			차염성	면 패드 착화 유무			
				6 ㎜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 ㎜ 이동 유무			
				25 ㎜ 균열게이지 관통 유무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비차열	차염성	6 ㎜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 ㎜ 이동 유무			
				25 ㎜ 균열게이지 관통 유무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부가시험 - 차연시험		공기누설량	25 Pa일 때 공기누설량 0.9㎥/min·㎡ 이하			
	(도어클로저 부착 시) 방화문 작동 힘			문을 열 때	133 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 N 이하		
	부가시험 - 문세트 방화문 필수 시험항목	비틀림강도		개폐 이상 및 사용상 지장 유무			
		연직하중강도		잔류 변위 3 ㎜ 이하에서 개폐 이상 및 사용상 지장 유무			
		개폐력		열리는 힘 / 닫히는 힘 50 N 이하			
	(해당 시) 부가 시험 - 내충격시험			방화상 유해한 파괴, 박리 탈락 유무			
자동방화셔터	내화시험	차열	차열성	문짝 평균상승온도	140 ℃ 이하		
				문짝 최고상승온도	180 ℃ 이하		
				문틀 최고상승온도	360 ℃ 이하		
			차염성	면 패드 착화 유무			
				6 ㎜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 ㎜ 이동 유무			
				25 ㎜ 균열게이지 관통 유무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비차열	차염성	6 ㎜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 ㎜ 이동 유무			
				25 ㎜ 균열게이지 관통 유무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부가시험 - 차연시험		공기누설량	25 Pa일 때 공기누설량 0.9㎥/min·㎡ 이하			
	부가 시험 - 개폐 시험			개폐의 원활한 작동			
				개폐 시 평균속도	전동개폐 2.5 ~ 6.5 m/min		
					자중강하(수동) 3 ~ 7 m/min		
				개폐 시 상부 및 하부 끝부분에서 자동정지			
				강하 중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			
	(해당 시) 부가 시험 - 내충격시험			방화상 유해한 파괴, 박리 탈락 유무			

☞ 뒷면에 계속

승강기문	내화시험	차열	차열성	문짝 평균상승온도	140℃ 이하		
				문짝 최고상승온도	180℃ 이하		
				문틀 최고상승온도	360℃ 이하		
			차염성	면 패드 착화 유무			
				6㎜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 이동 유무			
				25㎜ 균열게이지 관통 유무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비차열	차염성	6㎜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 이동 유무			
				25㎜ 균열게이지 관통 유무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 내화채움구조 품질시험 결과보고서

인정 품목	작 성 내 용				
	항 목		검사기준	구 분	시험결과
내화채움구조	내화 시험 (OO 분)	차열성	시험체 최고온도 (상승온도)	A	℃
				B	℃
			이동열전대 (상승온도)	A	℃
				B	℃
		차염성	면 패드 착화 유무	A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면 패드 착화 유무	B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유무		

[별지 제5호서식]

시험체 제작 확인서

상품명 :

구조명 또는 제품명 :

우리 시험기관은 인정신청인이 상기 제품을 우리기관에 시험 의뢰함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9조제9항에 의거, 인정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확인한 후 신청자가 신청 시 제출한 신청내용(설계도서 등)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험하고, 시험해체 과정을 기록 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정신청 의뢰자 _____ (인)

시험기관 확인자 _____ (인)

붙임 : 시험체 확인(날인이나 서명), 시험체 제작 및 해체 과정 등의 확인 사진 및 제작일지 자료 첨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시험기관 점검표

기 관 명		대 표 자	
시험장소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시험기관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적합여부
신청서관리	▪ 신청서검토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품질시험 의뢰신청서의 접수, 검토, 보완, 변경 및 반려 포함)	▪	
	▪ 신청서 검토기록이 관리되는지 여부 (※ 시험 수행 여부, 시험처리기간 준수 가능성 등)	▪	
	▪ 신청서검토절차에 따라 필요시 보완, 변경 및 반려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 인정기관으로부터 보내진 품질시험자료 접수 및 검토하는지 여부	▪	
	▪ 절차상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	
시료 및 환경조건관리	▪ 시료관리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시료의 수령, 취급, 보호, 보관 및 처분 포함)	▪	
	▪ 시료의 수령시 관리대장작성 및 봉인확인방법은 적절한지 여부 (※ 접수일자, 시료채취 확인서와 서명 및 수량 동일 여부 확인 포함)	▪	
	▪ 시료 수령후 취급, 보호 및 보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	
	▪ 시료 사용시 사용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시료채취확인서의 봉인방법과 일치 등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시료 확인 사진 포함)	▪	
시험체 제작 및 해체확인	▪ 환경조건관리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의 관리기준 설정, 관리, 측정 및 기록 포함	▪	

☞ 뒷면에 계속

	▪ 환경조건의 관리기준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	
	▪ 환경조건을 측정, 기록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시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	
	▪ 시험체 제작 및 해체 확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	▪	
	▪ 시험체 제작 및 해체 확인 체크리스트, 제작과정 및 사진 관리를 하는지 여부	▪	
시험의 실시	▪ 고객의 시험과정 입회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시험 항목별로 시험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시험 일지 및 원시데이터(Raw data)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시험 방법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기록 관리 및 교정 실시하는지 여부	▪	
시험결과 보고서 발급	▪ 시험결과보고서 관리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보고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포함	▪	
	▪ 시험결과보고서 관리절차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 검토, 승인되고 있는지 여부	▪	
	▪ 시험결과보고서 발급대장 작성 및 유지 관리 여부	▪	
	▪ 시험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된 보고서임을 표시하고 대체하는 원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고객 불만처리	▪ 고객 불만 처리 절차 및 관리 대장 작성하는지 여부	▪	
기록관리	▪ 기록관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시험과 관련된 기록의 수집, 식별, 보관, 보호, 열람 및 폐기 포함	▪	
	▪ 수집할 기록의 목록이 적절하게 정해졌는지 여부	▪	
	▪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고 식별하는지 여부	▪	
	▪ 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가 적절한지 여부	▪	
	▪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일지, 원시데이터 등 추적성 확보 여부 (※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일지, 원시데이터, 신청서 등 추적관리 확인	▪	
	▪ 시험결과보고서는 위변조 확인요청에 대응 등 열람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 기록의 폐기가 적절한지 여부 (※ 시험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험과정 기록 서류의 보유기간 준수	▪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정자재등의 판매실적 제출서식

품질인정자재등의 판매실적 대장 (__년 __분기)

(1쪽 중 제1쪽)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조현장(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일련번호	건축자재 내역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자재유통업자			
	품질관리서번호	작성일자	인정품목	품질인정번호	내화성능시간	상품명	구조또는제품명	사용부위	로트번호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주소	사무소전화번호	성명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성명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건축공사장 품질관리상태에 따른 개선요청서

인정품목	☐ 내화구조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인정업체			
인정번호		구조 또는 제품명	
현 장 명			
현장주소			
개선요청 사항			
개선조치 기한	개선요청서 발행 후 일 이내		
점검확인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